

성과배분측면에서 검토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법 연구

신 성 호* · 장 기 술**

목 차

- I. 서론
- II. 대학 기술의 사업화
 - 1. 대학 기술 사업화의 의의
 - 2. 기술지주회사의 개념과 역할
 -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개념과 역할
 - 4.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현황
- III. 대학의 발명자 보상 체계
 - 1. 직무발명제도
 - 2. 발명자 보상의 중요성
 - 3. 직무발명에 따른 정당한 보상
- IV. 기술지주회사 수익발생시 보상의 문제점
 - 1.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 성과의 보상 절차
 - 2. 기술지주회사의 배당 절차
 - 3.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보상 규정
 - 4. 기술지주회사 결산에 따른 문제점
 - 5. 산학협력단과 발명자 간 분쟁 가능성
 - 6.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와와의 보상 측면에서 비교
- V. 보상측면에서 바라본 대학 기술사업화의 대안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변호사.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장.

1. 산학협력단의 내부규정 변경
2. 보상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3.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의 일원화

VI. 결론

초록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산학연협력은 기업과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산학연협력의 성과로써 대학에서 지속적인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그 성과에 대한 배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 기술의 사업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지주회사 제도에 있어서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 발명자인 대학의 교직원에게 원활히 귀속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대학 기술을 사업화 하였을 경우 사업화의 성과로 발생하는 이익이 어떤 과정으로 발명자에게 보상이 되는지 판단하여보고, 다른 유사한 제도와 비교하였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상법상 제도에 따라서 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때 발명자로부터 기술을 승계 받는 산학협력단과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도 발명자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의 성과를 발명자에게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최근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설립형태를 감안하여 보면 기술지주회사에서 발명자에게 보상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기술지주회사, 발명자 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단, 대학 기술의 사업화

I. 서론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산학연협력은 기업과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¹⁾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맞추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정부도 R&D 예산을 연평균 6.5%씩 확대하였고,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²⁾ 대학의 경우에도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우수기술의 사업화와 성공적인 자회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제정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학에서는 기술지주회사제도를 바탕으로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9월 5일 설립된 제1호 기술지주회사인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시작으로 2013년 9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26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 완료되었다. 설립된 지주회사들의 총 자회사 개수는 139개에 이르러 기술지주회사 제도는 대학 기술 사업화를 위한 하나의 제도로 자리를 잡았으며 양적인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³⁾

기술지주회사의 제도적인 정착이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과의 관리나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익의 배분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국내에서 설립된 기술지주회사가 성과측면에서는 성숙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인 사업화 사례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표면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자산을 매개로 하여 자회사의 경영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로, 대학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자회사의 모태 역할을 하고 있다.⁴⁾ 기술지주회사는 사업화 경험이 부족한 연구자들을 돕

1) 이도형,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2012-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2면.

2) 고정호,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8면.

3)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08-2012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성과,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13, 6면.

4) 이성상, “스페셜 리포트_해외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사례”, 기술사업화매거진,

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사업화함에 있어 운용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에서 성과가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설립목적에 맞게 분쟁이 없이 성과의 배분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화 방식과 비교를 통해 기술지주회사의 제도 측면에서 새로운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대학 기술의 사업화

1. 대학 기술 사업화의 의의

국내에서 2012년 기준으로 대학에 연간 5조 2796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되고 있다.⁵⁾ 이는 정부 연구개발투자금액의 약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학은 연구개발의 산실이며 중요 연구결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학에서 연구 개발된 주요기술이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를 통해 성과창출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사업화 관련 법령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법률(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는 기술의 사업화를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학 기술의 사업화를 좁은 의미로는 대학이 개발한 무형의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하는 것과 주로 개발된 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시키거나 응용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판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신규회사를 M&A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현 벤처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실무적으로는 “개발된 기술의 이전, 거래, 확산과 적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반활동과 그 과정”으

2008 AUTUMN(2008), KIAT.

5)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sts.ntis.go.kr/lo13/retrieve.jsp?icode=DT_AAA0001>, 검색일: 2013. 5. 8.

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⁶⁾ 일반적으로 대학 기술의 사업화라는 용어는 라이선싱과 특허 및 노하우의 이전을 포함한 간접적인 사업화에 더하여 대학 자회사의 창업 혹은 spin-off를 통한 사업화 등 직접적인 사업화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업화의 범위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기술을 대학의 자회사를 통하여 상용화하는 것으로 대학 기술의 직접사업화의 개념에 따라 사업화를 이해하고 사업화 성과 배분에 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대학의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학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법에는 표1과 같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이고, 둘째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통한 사업화, 셋째는 실험실 창업이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보유한 대학 기술을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한 다음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통하여 사업화를 하는 방법이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식으로 대학 기술을 사업화 한다. 실험실창업이란 교수 또는 연구원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 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 또는 연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⁷⁾

실험실 창업은 대학이 직접 사업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겸직의 허가, 실험실 공장 설치의 허가 등을 통해 연구자의 창업을 보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험실 창업을 통해 형성된 회사와 대학 간에 직접적인 지분관계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산학협력단이 실험실 창업을 하는 기업에 보유한 기술을 직접 혹은 기술지주회사를 통하여 출자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관련 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창업된 기업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혹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실험실 창업으로 설립되는 회사에는 대학의 기술이 라이선스 또는 양도의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학 소유 기술이 직접 출자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험실 창업의 경우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지분 관계가

6) 양용석, "기술사업화의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술로 산정의 필요성", 기술사업화매거진, 2009 SUMMER(2009), KIAT.

7) ㈜벤처진흥원, <<http://www.bizmake.net/venture/index3d.htm>>, 검색일: 2014. 5. 8.

없기 때문에 대학이 직접사업화를 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글에서는 기술지주회사 제도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를 중심으로 대학 기술의 사업화 성과배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대학 기술 사업화 방법의 비교

구분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실험실창업
관련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분 구조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보유	산학협력단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20% 이상 보유	창업자인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지분으로 구성
대학 기술 투자 참여방법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지재권 출자 후 기술지주회사에서 자회사로 재출자	산학협력단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지재권 출자	지재권은 산학협력단이 보유, 필요할 경우 창업기업과 라이선싱 혹은 양도 계약으로 해결
기타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전문가들의 경영지원 가능	산학협력단의 직접 운영으로 비용절감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직접 운영을 통한 유기적 관계형성 가능

2. 기술지주회사의 개념과 역할

기술지주회사란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산촉법상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을 기조로 설립되어야 한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1항).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대학의 산학기관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연구계약과 특허의 소유 및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산학협력단

은 대학의 하부조직으로서 비영리 공공성과 법제적 제한으로 인해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목표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산축법을 개정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사업화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로 주식회사 형태의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⁸⁾

기술지주회사제도는 대학의 기능을 기존에 교육과 연구로 나누어 보는 것과는 달리 연구개발된 기술을 권리화하여 사업과 연결시키고, 사업화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하는 순환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⁹⁾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기술지주회사에서는 출자 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추후 자회사의 사업화 성과에 따른 수익이 기술지주회사에 발생하게 되면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로부터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받아 기술사업화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대학은 직접 사업화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의 부담, 예를 들어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기업 채무에 대한 부담 문제, 물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생산물의 결함으로 발생 가능한 하자에 대한 책임 문제 등에서 벗어나면서 사업화를 통한 수익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개념과 역할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과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8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산학협력단에서 사업화를 진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대학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으로 기술지주회사와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

8) 장기술, "대학기술의 사업화 방안-대학기술지주회사제도를 중심으로-", 인하법학, 제11권 제3호(2008),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22면.

9) 조근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사업화촉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Brief Report-", 기술보증기금, 2011, 5면.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04월 27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제도가 되었다. 2000년대 초 벤처법의 붕괴와 함께 교수 및 연구원 창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책 당국은 벤처법의 개정을 통해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 여건 개선과 함께 대학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출자하여 직접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였다.¹⁰⁾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표 1>에서와 같이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산학협력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지의 방법상에 큰 차이가 있다.

4.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현황

2008년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시행되고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제1호로 설립되었다. 그 후 6년 동안 기술지주회사 제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2013년 9월말 기준 총 26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연합설립에 참여한 대학을 포함할 경우 전국대학 433개 중 총 34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참여하였다.¹¹⁾ 26개의 기술지주회사는 2013년 9월말 기준 총 139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편입하였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총 90개사를 신규로 창업하는 등 기술지주회사가 기술 기반 창업을 선도하고 있고,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양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2012년말 조사에 응한 53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매출액이 321억원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이 141%로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함께 자회사의 매출성과도 성장 중이다. 2012년말 기준으로 기술지주회사 총직원은 121명, 118개의 자회사의 총직원은 785명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통해 총 906명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기여하고 있다. 2013년 3월 기술지주회사 현

10) 대구경북중기청, “080225전문회사설립(보도자료)”, 중소기업청, <<http://search.smba.go.kr/RSA/front/Search.jsp>>, 검색일: 2014. 7. 7.

11)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08-2012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성과,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13, 6면.

12)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08-2012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성과,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13, 7면.

황조사 결과 매출 현황조사에 응답한 10개 기술지주회사의 누적 매출액(투자금 회수 및 자체 수익)은 총 5,096백만원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기술지주회사제도는 양적으로는 성장하였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¹³⁾

〈표 2〉 기술지주회사 누적 매출액(투자금 회수액) 현황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배당, 지분매각 등	자체 수익	소계
부산대	2,000.0	0.0	2,000.0
서울대	1,000.0	144.0	1,144.0
한양대	300.0	335.0	635.0
고려대	250.2	162.0	412.2
인천대	342.0	41.0	383.0
강원연합	247.7	52.9	300.5
동신대	200.0	0.0	200.0
전남대	12.0	0.0	12.0
전북연합	0.0	5.0	5.0
동국대	0.0	4.6	4.6
합 계	4,351.9	744.5	5,096.3

주) 자체수익: 경영·기술자문 등 자체 수익

(단위: 백만원)

다음 장에서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 성과가 대학의 발명자인 교직원에게 원만하게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은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대학의 발명자 보상 체계

대학 기술사업화를 위해 도입된 기술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대학 연구개발 선

13)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08-2012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성과,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13, 17면.

순환 구조와 대학재정에의 기여, 나아가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발생한 성과가 대학재정에 기여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화 성과가 대학 및 기술을 발명한 발명자에게 원활하게 이전되어야 한다. 공공기술 사업화의 성과 배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화 성과의 배분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발명자 보상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직무발명제도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인 발명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 경우 이를 직무발명이라 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대학 교직원의 발명인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및 각 대학의 지식재산규정과 근무규칙에 따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대학에서 승계하는 것이 아닌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하고 소유하며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종업원의 발명은 서로 대립되는 2개의 법 영역에 걸쳐 있다. 종업원에 의한 것이므로 노동법의 적용영역일 뿐만 아니라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법의 적용영역이기도 한 것이다.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에게 최초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의 성과는 모두 사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전자를 강조하면 발명은 종업원에게 귀속되며, 후자를 강조하면 발명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연유에서 발명진흥법은 발명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종업원에게는 발명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를 법정하고 있다.¹⁴⁾

14) 임병웅, 이지특허법, 제8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0, 253면.

2. 발명자 보상의 중요성

직무발명보상제도는 합리적인 보상을 통한 연구의욕 고취와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를 통하여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국경제의 해법의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¹⁵⁾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인 기술관리 및 마케팅 활동,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제도, 기술이전 교육, 구성원들의 역량과 기관 전략 등 조직, 제도 환경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발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기술이전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해외의 사례에서도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한 결과 연구자에 대한 보상이 높을수록 기술이전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¹⁷⁾ 따라서 보상을 통하여 발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기술이전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처럼,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3. 직무발명에 따른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은 자유발명과 달리 발명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발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진흥법에서는 사용자와 발명자 사이에 권리의 균형을 위해 직무발명제도를 취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의 경우 사용자 등이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발명진흥법의 정당한 보상의 취지를 받아들이며 대학의 발명과 기술의 이용을 규정하

15) 문선영, “근로자의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3권 제3호(2008), 경희법학연구소, 438면.

16) 이성상,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 변화와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3호(2012. 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77면.

17) Link, A. N. & Siegel, D. S., “Generating science-based growth: An Econometric analysis of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incentives on university-industry technology transfer,” *European Journal of Finance*, 11(2005), p.179.

고 있는 산촉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의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율하는 다른 법령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각종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대학의 교직원인 발명자는 보유한 발명에 의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때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00분의 50 이상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¹⁸⁾ 이는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서 대학 교직원들의 연구 및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학 기술의 유출 방지를 통해 대학의 혁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촉법과 기촉법에서 그 규율대상에 사업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의 취지를 살펴보면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의 경우에도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기술지주회사 제도에 따른 보상절차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IV. 기술지주회사 수익발생시 보상의 문제점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대학의 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통해

18) 19조(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일정 부분을 연구자와 공동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②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 학교의 교직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연구자 :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사람 :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산업계 및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고, 사업화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하여 대학의 연구에 순환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 기술의 통한 자회사 설립이 활성화 되고, 우수한 자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성과가 창출되며, 기술지주회사의 성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원활하게 발명자 및 대학에 귀속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수익의 귀속 측면에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1.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 성과의 보상 절차

일반적으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는 대학 교직원의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 받아 특허화한 후 그 대상 특허권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출자된 특허권을 다시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회사의 지배구조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순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사업화 수익은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배당을 통한 방법으로 기술지주회사에 발생이 되고, 앞서 발생된 수익은 배당을 통해서 산학협력단으로 이전된다. 산학협력단에서는 발명자 보상의 형태로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발명자에게 전달한다.

물론 산학협력단이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는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 산학협력단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낮은 방법이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에서는 배당을 통한 방법을 기준으로 사업화의 성과를 산학협력단에 귀속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기술지주회사의 배당 절차

기술지주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는 자체 매출을 통한 수익과 투자금의 회수가 있고 2013년 3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설립된 기술지주회사 누적 매출액

은 50억 정도이다. 이중 자체 매출을 통한 수익은 경영, 기술자문 등을 통하여 발생하였고, 투자금의 회수방법의 수익은 배당과 지분 매각으로 형성되었다.¹⁹⁾

산학협 제3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설립되도록 되어 있고,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은 상법상의 배당 방법을 통하여 대학 산학협력단에 이전될 수 있다. 상법상 이익배당은 제462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에 이익을 배당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주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 자본금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이다.²⁰⁾ 이와 같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기술지주회사에 적용해 보면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한다면 배당에 우선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사업화 성과로 받은 수익에서 기술지주회사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인 결손금을 보전하고,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배당가능금액에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 산학협력단에 배당이 가능하다.

3.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보상 규정

산학협력단에서 수령한 기술사업화 수익금은 관련법령 및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배분 될 것이다.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규정에 따른 사업화 보상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각 대학산학협력단의 사업화 보상 내용²¹⁾

산학협력단명	보상 규정	내용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	지식재산관리규정	지식재산관리규정상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

19)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08-2012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성과,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13, 17면.

20) 이철승, 회사법강의, 제20판, 박영사, 2012, 944면.

21) 각 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 2014. 6. 3.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발명자 사이의 기술사업화 계약 체결	현물출자지분의 50% 이상 보상
한양대학교	지식재산관리규정	특허에 대한 보상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부산대학교	지식재산관리규정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보상절차를 진행

기술이전 수익에 대한 발명자 보상의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실질적으로 산학협력단에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른 비율의 보상금을 각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표 3>에서와 같이 규정의 확인이 가능한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 중 과반수가 사업화의 성과를 발명자에게 배분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화의 성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4. 기술지주회사 결손에 따른 문제점

상법상 기술지주회사에 경영에 따른 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전을 한 후에 기술지주회사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배당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결손금이란 지출이 손실보다 많이 발생하였을 때 손실의 금액으로, 기술지주회사에서 발생 가능한 결손금에는 기술지주회사 자체의 경영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자회사의 손실이 포함 된다. 연결재무제표란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기업 집단으로 보아 각각의 개별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뜻한다. 이는 연결실체의 주주 및 채권자들에게 기업군 전체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²²⁾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술지주회사의 결손금을 평가하면 자회사의 손실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 비율만큼 기술지주회사의 손실로 계산된다.

22) 황인태, “연결재무제표의 재무제표화 논의와 과제”, 상장협연구, 제53호(200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0면.

성공확률이 2% 미만이라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술지주회사에서 설립하는 자회사중 극히 일부만이 성공 가능할 것이다.²³⁾ 따라서 기술지주회사로부터 출자되어 설립된 자회사들은 대부분 손실을 기록할 것이고 그 손실액이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술지주회사는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자체적인 수익 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수익이 적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술지주회사 운영에 따른 결손도 누적될 것이다.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발명자에게 보상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인 산촉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²⁴⁾를 우선적으로 검토 하여야 한다. 산촉법 제32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산촉법 제31조 제1항 제6호에는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을 포함하고 있다. 산촉법의 법령상 보상대상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배당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의 교직원인 발명자는 산촉법의 절차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기촉법 제19조 제2항에도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를 발명자에 대한 배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여야 발명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 성과가 산촉법 및 기촉법에 따라 발명자에 대한 보상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주주인 산학협력단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23) 서현교, 「2% 성공확률에 도전하는게 벤처」, Science Times, 2003. 9. 1차.

24)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동법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하나를 통해 M&A 등으로 일정 수익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누적된 결손금이 모두 처리가 된 후 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의 결손 및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자회사의 결손이 매각대금을 넘어선다면 산학협력단에 제공될 배당이 없을 것이다. 배당을 통해서 발명자에게 보상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결손금의 액수가 크다면 기술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하면 부족한 액수의 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자회사가 순차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에도 발명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에서 자회사1의 주식이 먼저 매각되어 기술지주회사의 결손금이 보전되고, 그 이후 자회사2의 주식이 매각된다면 자회사2에서 발생한 수익은 결손금의 보전 없이 기술지주회사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자회사1과 자회사2의 매각 순서에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의 결손을 보전하는 순서가 달라져서 자회사1과 자회사2에 투자한 기술의 발명자 간의 보상에 대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

5. 산학협력단과 발명자 간 분쟁 가능성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승계한 교직원인 발명자에게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결손 문제로 자회사 수익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할 경우 발명자는 특별법인 산촉법 및 기촉법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일반법인 발명진흥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판례 및 일본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① 사용자가 타사에 실시허락을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이른바 처분보상금)에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의 수익 (로열티 수입 + 크로스라이센싱의 경제적 이익 등) × 발명자들의 기여율 × 발명자들 중 원고 근로자의 기여율)에 의하여, ② 사용자가 자사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이른바 실시보상금)에는 보상금은 (사용자의 매출액 × 독점권 기여율(일반적으로 1/2) × 실시료율 × 발명자들의 기여율 × 발명자들 중 원고 근로자의 기여율)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²⁵⁾

이와 같이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발명을 기준으로 기여율을 판단할 뿐 사용자의 다른 사업군을 포괄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출자한 기술로부터 수익이 발생한 발명자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배당받는 금액과 관련 없이 자신의 발명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지주회사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규정은 산촉법 및 기촉법에 혹은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으로 예외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학협력단과 발명자인 교직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6.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와의 보상 측면에서 비교

앞서 살펴본 기술지주회사의 제도의 문제점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수익이 기술지주회사에 발생하고, 산학협력단은 배당 절차를 통해서 이익을 환수 받아 발명자에게 보상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자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화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직접 산학협력단에 귀속되어 발명자에게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와 기술지주회사제도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제도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사업화에 기여한 발명자에게 그 결과인 수익을 전달하는 측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특허에 대한 사업화를 어떤 제도를 통해서 진행하는가의 결정은 특허 보유권자인 산학협력단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대학 소속의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의 사업화 방향에 따라 보상방법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제도의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현재 존재하는 기술지주회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25) 문선영, “근로자의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3권 제3호(2008), 경희법학연구소, 453면.

V. 보상측면에서 바라본 대학 기술사업화의 대안

1. 산학협력단의 내부규정 변경

교직원의 발명을 승계한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인 교직원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규정 혹은 각종 국가과제에 결과물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성과의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자에게 일정 비율의 보상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가능하다(상법 제462조 제2항). 개별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뿐, 기술지주회사의 배당을 강제 할 수는 없다. 산학협력단이 사업화의 결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은 국가과제 결과물에 대한 법령, 기술이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50% 이상의 높은 비율로 결정되어 있는 반면에 산학협력단의 의사만으로 가능한 이익을 모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령 정비를 통하여 산학협력단의 보상을 강제한다면 산학협력단의 회계 및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대학 기술의 적극적 사업화 의지를 감소시키는 문제가 발생 할 것이다.

2. 보상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산학협력단에서 교직원인 발명자에게 사업화의 이익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지 않고 법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에서 산학협력단을 대신하여 직접 발명자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의 추세가 단독 설립으로부터 연합기술지주회사로 변경되고 있다. 연합기술지주회사란 수개의 산학협력단 혹은 공공연구소가 협력하여 한 개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이다. 연합기술지주회사는 강원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2009),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2011), 과거 특성화 5개 대학이 연합으로 설립한 미래과학기술지주회사(2014)가 존재하고, 공공연구기관 연합기술지주회사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7개 정부출연 연구

기관이 모여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2013)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²⁶⁾

기술지주회사가 연합지주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경우 단독 설립의 경우와 달리 기술지주회사의 주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개개의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지분율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의 지배구조가 공동기술지주회사 형태로 변경이 될수록 개별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낮아질 것이므로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명자로의 직접적 보상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기술지주회사가 발명자에게 직접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한 예로는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을 대신하여 발명자에게 산촉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있다.

현행 산촉법	개정방향검토
기술지주회사의 배당방법에 대해서는 “제39조의 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기술지주회사의 배당방법으로 제36조의6을 신설 제36조의6(이익배당의 방법) ① 기술지주회사는 법 제36조의2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술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산학협력단을 대신하여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가 제1항의 보상을 지급한 경우 보상의 책임을 면한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익배당액에서 제1항의 보상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기술지주회사의 채권자는 제1항의 보상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3.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의 일원화

대학의 교직원이 기술을 발명하였을 경우 발명은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대학

26) 김효정, 「출연 연 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지주 출범」, 지디넷코리아, 2013. 1. 21자.

의 산학협력단에 승계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은 발명자가 아니라 산학협력단이 보유한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대학 기술을 출자하여 사업화 할 경우 자회사를 매각 하거나,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기술지주회사에 귀속되어 직무발명을 승계 받는 기관과 사업화의 이익이 일차적으로 귀속되는 기관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발명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화의 이익이 귀속된 기술지주회사에서 발명자 보상이 가능한 산학협력단으로 이익의 이전이 필요하다.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통하여만 이익을 받을 수 있고, 배당 과정에서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교직원 발명자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 문제는 직무발명의 승계기관과 대학 기술의 사업화 주관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두 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Ⅵ.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사업화 방법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주요 사업화 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기술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발명자에 대한 기술지주회사의 사업화 성과 귀속의 문제는 발명의 귀속기관인 산학협력단과 사업화의 주관기관인 기술지주회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두 기관을 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기술지주회사 형태로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일원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단순히 대학에서 발명한 교직원의 발명을 승계하여 관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교육을 진흥하여 창의적인 산업인재를 육성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산학협력단의 임무를 한 기관에 포괄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볼 때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단을 단순히 일원화 할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의 제도적 차이점이 작아지고, 대학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기관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산학협력단에 분리하여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지주회사에서 발명자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하여 교직원인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바탕으로 발명자의 사업화 의지를 고취시키고, 산학협력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과 사업화의 지분구조에 대한 측면에서 연구된 것으로, 제도차원에서의 근원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을 포괄한 유기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 기술에 대한 사업화의 주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제도에 대하여 성과 배분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행정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산촉법에 예외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제도를 단순화 하지 못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대학과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내단행본〉

- 이도형,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2012-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 고정호,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2013.
-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08-2012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운영 성과, (사)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2013.
- 이성상, “스페셜 리포트 해외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 운영 사례”, 기술사업화매거진, 2008 AUTUMN(2008), KIAT.

양용석, “기술사업화의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술료 산정의 필요성”, 기술사업화매거진, 2009 SUMMER(2009), KIAT.

조근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사업화촉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Brief Report-“, 기술보증기금, 2011.

임병웅, 이지특허법, 제8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0.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0판, 박영사, 2012.

〈국내 학술지〉

장기술, “대학 기술의 사업화 방안-대학 기술지주회사제도를 중심으로-”, 인하법학, 제11권 제3호(2008).

황인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논의와 과제”, 상장협연구, 제53호(2006).

문선영, “근로자의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3권 제3호(2008).

이성상,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 변화와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3호(2012).

〈해외 학술지〉

Link, A. N. & Siegel, D. S., “Generating science-based growth: An Econometric analysis of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incentives on university-industry technology transfer,” *European Journal of Finance*, 11(2005).

〈신문기사〉

서현교, 「2% 성공확률에 도전하는게 벤처」, Science Times, 2003. 9. 1자.

최인영, 「출연연 공동기술지주 설립추진」, 연합뉴스, 2013. 7. 1자.

Review to Improvement of Profit Sharing System in Technology Holding Company Based on Industry- Academia-Research Cooperation

Seongho Shin & Ki-sool Jang

Abstract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is consistently emerging as a new counterplan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business organizations and governments in global competition. Hence, many universities start up technology-enabled ventures as the performance of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justly distribute profit from the technology-enabled ventures.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prescribed in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CT, is one way for commercializing technology of university. This paper studied whether to fairly share the profit generated from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with inventors who are employed in universities in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This paper studied though which procedure profits of affiliated companies are shared with inventors in case of founding the affiliated companies of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for commercializing the technology, profits generated from the affiliated companies and compared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 with other similar systems.

The inventors are compensated for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under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CT and COMMERCIAL ACT in case of selecting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 for commercializing the technology. It was found that the inventors were not appropriately compensated for suc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managed by the technology-holding companies though the inventors assign their technologies to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prescribed in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MOTION OF INDUSTRIAL EDUCATION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ACT to ensure the inventors apposite compensation for commercialization profits generated though the technology-holding company system,

Namely, it is significantly advised that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system is improved in such a way to allow technology-holding companies to provide inventors with rewards directly, considering particularly joint technology-holding companies incorporated recently.

Keywords

technology holding company,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reward of commercializing of university technology, rewarded to innovator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commercializing of university technology

